



대구대학교

KIBO 기술보증기금

신한은행

업무협약서

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대학교” 라 한다), 기술보증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, 신한은행(이하 “은행” 이라 한다)은 산학협력단 내 창업기업 및 가족회사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협약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“대학교” 의 교원창업자, 학생창업자 및 산학협력단 내 창업기업과 가족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사항)

협약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- ① “대학교” 는 협약기관이 교원창업자, 학생창업자 및 산학협력단 내 창업 기업과 가족회사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- ② “기금” 은 교원창업자, 학생창업자 및 산학협력단 내 창업기업과 가족 회사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 지원
- ③ “은행” 은 교원창업자, 학생창업자 및 산학협력단 내 창업기업과 가족 회사에 금융 및 금융컨설팅 지원
- ④ 기타 협약기관 사이에 별도로 합의한 사항

제3조 (비밀유지)

협약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제4조 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.

제5조 (구속력)

본 협약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서, 본 협약서 제3조에서 정한 의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.

제6조 (협약의 해지)

협약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제7조 (효력발생)

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서명일로부터 1년간을 협약기간으로 하되, 각 기관이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 및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상호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0월 26일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
단장 이덕영

기술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

본부장 곽영철

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

본부장 손현택

이덕영

곽영철

손현택